개정일: 2023-08-01

# 공정거래규정

문서번호

개정차수: 1

개정 이력

차수	제(개)정 일자	시행일자	주요 개정 내용
1	2023-08-01	2023-08-01	초도 제정

#### 대주코레스㈜

개정일: 2023-08-01

# 공정거래규정

문서번호

개정차수: 1

이 규정은 대주코레스㈜가 시장에서 어느 한쪽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지 않으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,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1.법률 준수

우리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"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.

## 2.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

서면거래문화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를 도입,사용한다.

### 3.부당한 약정 금지

- ①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(부당한 약정)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아래의 경우 부당한 약정으로 본다.
  - 1)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
  - 2) 민원처리,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행위
  - 3)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
  - 4) 그 밖에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이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전가시키는 행위

#### 4.시장지배적 지위 등 남용 금지

- 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②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키거나 거래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③ 거래 상대방의 사업방식이나 사업활동에 간섭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#### 대주코레스㈜

개정일: 2023-08-01

# 공정거래규정

문서번호

개정차수: 1

### 5.담합 및 부정경쟁 금지

- ①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, 공급량, 거래지역,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② 고객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③ 경쟁사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④ 경쟁업체, 협력업체,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, 회사 또는 제 3 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#### 6.자금세탁 금지

고객, 파트너, 협력업체, 기타 기관 및 개인의 자금세탁과 관련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#### 7.지식재산권

계약관계에 있는 거래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, 타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#### 8.조세

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사무처리를 위해 사업장이 위치한 각 국의 세법을 준수하고, 주어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지 않는다.

#### 9.조달

협력업체와 공정한 상생관계를 추구하며,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.